

의안
번호

1240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오은옥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오은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0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의 원 : 오은옥 · 김경희 · 김묘정 · 김상현 · 백승규
서명일 · 서영권 · 이정희 · 진형익 ·
최정훈 의원(10명)

1. 제안이유

- 각종 건설공사 과정에서 보도를 점용하거나 공사자재 및 폐기물 등을 보도에 방치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운영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및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마.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관계 법령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배치하는 보행안전도우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도점용공사로 인한 보행권 침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보행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2. “보도점용공사”란 「도로법」 제23조 및 제108조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이 제한되는 보도를 대신하여 차도에 임시로 설치한 보행로 또는 기존 보도의 유효 폭을 축소하여 확보한 보행로를 말한다.
4.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보행로 또는 우회 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도점용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점용공사로서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보도점용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의 보도를 전면 폐쇄하여 보행자의 통

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어 시장이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도점용공사 현장 주변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시장이 보도점용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 표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점용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출연한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기준)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도점용공사 현장을 통행하려는 보행자에게 임시보행로 또는 우회 보

행로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 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및 보수 요청. 이 경우 점검 결과 보고 및 보수 요청은 보도점용공사 시행자에게 한다.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임시보행로 또는 우회 보행로를 통행하는 경우 통행 동반
4. 보도점용공사 관련 시민 불편 사항 현장 접수 및 접수된 불편 사항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8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복장과 이름표
2.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3. 교통 지도에 적합한 경광봉, 호루라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확보해야 하는 임시보행로 구간 길이	1일당 배치인원 수	비고
10미터 이상 30미터 미만	1명	
30미터 이상	2명	

비고

1. 구간 길이가 10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교차로 주변이거나 협소한 보도에서 소규모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 또는 시점과 종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 보행자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보행안전도우미를 1명 배치해야 한다.
2. 우회 보행로 구간에 횡단보도 등이 있어 보행자의 추가 진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3. 학교·전통시장 주변, 보도 폭 3미터 미만, 임시보행로가 차도 측에 설치된 경우, 임시보행로 구간 내에 횡단보도가 있거나 공사구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 등 혼잡구간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행안전도우미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歩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 9. 생략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제23조(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제54조(보도의 설치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보도의 설치 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 1. 2.]

제54조(보도의 설치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도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도의 설치 기준, 구조 및 제2항에 따른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 6. 3.]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108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조제2호·제9호, 제4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6조의2제3항,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9조,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11조, 제113조제1항제2호,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 ~ ⑥ 생략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봇대·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

- 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 35. 생략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보행권의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행정책의 수립·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서의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4.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조성·정비·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한 보행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적용·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 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 8. 생략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①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④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
오은옥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 검토보고

1 발의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및 제28조(조례)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제76조(의안의 발의)
- 「지방자치법」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2 발의 개요

- 조 례 명 :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 상정시기 : 제150회 임시회 (2026. 3월말 예정)
- 제 안 자 : 오은옥 의원 (산업경제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 건설공사중 보도를 점용하거나 공사자재 및 폐기물 등을 보도에 방치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 이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운영하여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제2조)
-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제4조)
-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복장 및 장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4 타 지자체 조례 현황 (총28개소, 시도13, 시군구15)

구 분	창원	서울	인천	강원도	경기도					충남			충북세종	전북전주	광주	대구	부산	경북	울산	제주
					수원	시흥	이천	부천	성남	아산	천안	논산								
인 구 (백만명)	101	933	309	154	122	55	23	79	92	35	65	10	39	62	143	240	331	262	110	69
자립도 (%)	28	75	49	28	42	28	45	28	53	32	33	10	54	22	34	41	39	24	42	33

5 검토내용

- 관계법령 저촉 여부 : **해당없음**
- 입법 필요성 검토
 - 「도로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 도로점용 공사 시 안전 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 부재한 실정임.
 - 특히,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 구간의 경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안전사고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
 - 이에 보도점용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보행안전사고 위험을 경감하고, **시민의 보행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재정부담 검토 : 44,763천원/년 (비용추계서 붙임1 참조)
 - (산출근거) [붙임2]배치기준에 따라 연간 평균 245명* 배치
 - * 연간 평균 245명, 3년 평균 35건 / 연(공사) × 1인(배치) × 7일(기간)
 - ** 적용 제외 공사 : 전면 폐쇄 4건 (10m 미만 공사 없음)

6 종합의견 **의원발의(안) 수용**

- 본 조례안은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장에 대하여 보행약자의 통행안전을 보장하고,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임무, 복장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행안전권 확보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목적은 타당함.**
- 조례 제정으로 연간 약 44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공사비 낙찰 차액 등 **기존 사업비 총당 가능하여 재정상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배치하는 보행안전도우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도점용공사로 인한 보행권 침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보행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2. “보도점용공사”란 「도로법」 제23조 및 제108조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이 제한되는 보도를 대신하여 차도에 임시로 설치한 보행로 또는 기존 보도의 유효 폭을 축소하여 확보한 보행로를 말한다.
4.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보행로 또는 우회 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도점용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점용공사로서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보도점용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의 보도를 전면 폐쇄하여 보행자의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어 시장이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도점용공사 현장 주변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시장이 보도점용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점용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출연한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기준)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도점용공사 현장을 통행하려는 보행자에게 임시보행로 또는 우회 보행로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 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및 보수 요청. 이 경우 점검 결과 보고 및 보수 요청은 보도점용공사 시행자에게 한다.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임시보행로 또는 우회 보행로를 통행하는 경우 통행 동반
4. 보도점용공사 관련 시민 불편 사항 현장 접수 및 접수된 불편 사항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8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복장과 이름표
2.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3. 교통 지도에 적합한 경광봉, 호루라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확보해야 하는 임시보행로 구간 길이	1일당 배치인원 수	비고
10미터 이상 30미터 미만	1명	
30미터 이상	2명	

비고

1. 구간 길이가 10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교차로 주변이거나 협소한 보도에서 소규모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 또는 시점과 종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 보행자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보행안전도우미를 1명 배치해야 한다.
2. 우회 보행로 구간에 횡단보도 등이 있어 보행자의 추가 진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3. 학교·전통시장 주변, 보도 폭 3미터 미만, 임시보행로가 차도 측에 설치된 경우, 임시보행로 구간 내에 횡단보도가 있거나 공사구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 등 혼잡구간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행안전도우미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발생요인

○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안 제5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조례(안) 별표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 연간 평균 245명 배치

- 연간 평균 245명: 35건(공사) × 1인(배치) × 7일(기간)

○ 창원시 관내 보도정비공사 3개년 현황

(건 / 백만원)

연도	합 계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109	7,964	24	1,663	23	1,057	19	822	21	2,859	22	1,564
2023	37	3,386	10	838	4	446	5	164	10	1,393	8	545
2024	40	2,543	11	704	9	378	7	265	5	545	8	651
2025	32	2,035	3	120	10	233	7	393	6	921	6	368

* 적용 제외 4건 : 전면 폐쇄 4건

** 3년 평균 공사 35건(105 ÷ 3)

○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기준

임시보행로 구간	배치인원(인/일)	비 고
10m 이상, 30m 미만	1	
30m 이상	2	

○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단가(1인)

(단위: 원)

공표일	2026	2027	2028	2029	2030
노임단가 (보통인부)	172,068원	177,230원	182,547원	188,023원	193,664원

※ 2027~2030년 노임단가 매년 물가상승률 3% 반영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 계	42,157	43,421	44,724	46,065	47,448
시 비	42,157	43,421	44,724	46,065	47,448

다. 재원조달방안: 창원시 일반회계 재원으로 편성

3. 작성자 :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김재호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출	42,157	43,421	44,724	46,065	47,448	223,815	
보행안전도우미 인건비	42,157	43,421	44,724	46,065	47,448	223,815	
재원 조달	42,157	43,421	44,724	46,065	47,448	223,815	
의존 재원	소 계	42,157	43,421	44,724	46,065	47,448	223,815
	시 비	42,157	43,421	44,724	46,065	47,448	223,815

※ 5년 평균 비용 : 44,763천원/ 평균 공사비의 약 1.69%

라. 예산담당관 의견

부서명	의 견
예산담당관	- 건설공사장 보행 안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효과 대비 연간 소요예산이 적정하며, 기존 사업비 내에서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함



창원시의회



수신 창원시장(정책기획관)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관련 검토의견 조회 송부(오은옥 의원)

지방자치법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관련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6. 2. 23.(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사항: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저촉 여부, 재정 부담 등
- 조례안 개요

조례안	발의자	상정시기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오은옥 의원	제1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붙임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창원시의회의장



정책지원관 유영은 입법지원팀장 장설민 의정담당관 대결 2026. 2. 13. 의회사무국장 전결 황보성

협조자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시행 의사입법담당관-1117 (2026. 2. 13.) 접수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의사입법담당관 (용호동) / <http://www.changwon.go.kr>

전화번호 055-225-5373 팩스번호 055-225-4743 / cost403@korea.kr / 대국민 공개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오은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6. . .

발 의 의 원: 오은옥 의원

찬 성 의 원:

1. 제안이유

- 각종 건설공사 과정에서 보도를 점용하거나 공사자재 및 폐기물 등을 보도에 방치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운영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및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마.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관계 법령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배치하는 보행안전도우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도점용공사로 인한 보행권 침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보행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2. “보도점용공사”란 「도로법」 제23조 및 제108조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이 제한되는 보도를 대신하여 차도에 임시로 설치한 보행로 또는 기존 보도의 유효 폭을 축소하여 확보한 보행로를 말한다.
4.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보행로 또는 우회 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도점용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점용공사로서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보도점용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의 보도를 전면 폐쇄하여 보행자의 통

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어 시장이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도점용공사 현장 주변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시장이 보도점용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 표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점용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출연한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기준)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도점용공사 현장을 통행하려는 보행자에게 임시보행로 또는 우회 보

행로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 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및 보수 요청. 이 경우 점검 결과 보고 및 보수 요청은 보도점용공사 시행자에게 한다.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임시보행로 또는 우회 보행로를 통행하는 경우 통행 동반
4. 보도점용공사 관련 시민 불편 사항 현장 접수 및 접수된 불편 사항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8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복장과 이름표
2.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3. 교통 지도에 적합한 경광봉, 호루라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확보해야 하는 임시보행로 구간 길이	1일당 배치인원 수	근무 위치
10미터 이상 30미터 미만	1명	구간 내 순회
30미터 이상	2명	구간 내 양측 출입구

비고

1. 구간 길이가 10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교차로 주변이거나 협소한 보도에서 소규모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 또는 시점과 종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 보행자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보행안전도우미를 1명 배치해야 한다.
2. 우회 보행로 구간에 횡단보도 등이 있어 보행자의 추가 진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3. 학교·전통시장 주변, 보도 폭 3미터 미만, 임시보행로가 차도 측에 설치된 경우, 임시보행로 구간 내에 횡단보도가 있거나 공사구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 등 혼잡구간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행안전도우미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